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9가소 약정금
원 고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)

피 고 1.

전주시

아파트)

2.

전주시

트)

변 론 종 결 2020. . . .

판 결 선 고 2020. 6. . . 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.부터 2020. 6. .까지 연 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전 주 지 방 법 원

제 2 -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. 약정금
원고, 항소인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(만성동)

(송달영수인 전종필)

피고, 피항소인

1.

전주시
아파트)

2.

전주시
트)

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. 6. , 선고 2019가소: 판결

변 론 종 결 2021. 5. .

판 결 선 고 2021. 6. 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.부터 2021. 6.까지는 연 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